

2013. 6. 24(월) 10:00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포함)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 목 차 -

I. 제안 경위 -----	2
II. 세입·세출 결산 총괄 -----	2
III. 세입 결산 -----	4
1. 세입결산 총괄 -----	4
2. 과목별 세입결산 -----	5
2-1. 이전수입 -----	6
2-2. 자체수입 -----	7
2-3. 지방교육채 및 전년도 이월액 -----	7
3. 불납결손 및 미수납액 현황 -----	8
4. 예산현액과 세입결산액의 차액 발생 -----	10
5. 연도별 잉여금 처리현황 -----	12
IV. 세출 결산 -----	13
1. 세출결산 총괄 -----	13
2. 정책사업별 세출결산 -----	14
3. 소관별 세출결산 -----	15
4. 성질별 세출결산 -----	15
5. 불용액 -----	16
6. 예산 이용·전용 및 이체 -----	18
7. 다음연도 이월액 -----	19
8. 예비비 지출 -----	20
9. 채무부담행위 -----	21
10. 채권 및 채무 결산 -----	22
11.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	23
12. 물품 증감 및 현재액 -----	23
V. 결산검사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 -----	24

I. 제안 경위

- 본 승인안은 2013년 5월 31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13년 6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제1항 및 제129조(예비비) 제2항에 의거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함.

II. 세입·세출 결산 총괄

< 세입·세출 결산 개요 >

(단위 : 백만원)

연도	예산현액 (A)	세입결산 (B)	세출결산 (C)	세계잉여금 (D=B-C)	이월금 (E)	국고보조 금잔액 (F)	지방채 상환 (G)	순세계 잉여금 (D-E-F-G)
2010	2,583,615	2,491,580	2,326,559	165,021	215,617	-	-	-50,597
2011	2,712,056	2,612,189	2,578,930	33,259	38,335	29	-	- 5,105
2012	2,613,884	2,607,475	2,517,298	90,177	67,328	-	4,700	18,149

- 2012회계연도 예산현액 2조 6,138억 8,400만원은 최종예산액 2조 5,755억 4,800만원에 전년도 이월금 383억 3,600만원을 포함한 것으로
-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9.8%인 2조 6,074억 7,500만원이고
-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6.3%인 2조 5,172억 9,800만원이며
- 세입결산액(실제수납액)과 세출결산액(지출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901억 7,700만원임.
 - 이 중 이월금은 673억 2,800만원, 지방교육채 상환¹⁾은 47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81억 4,900백만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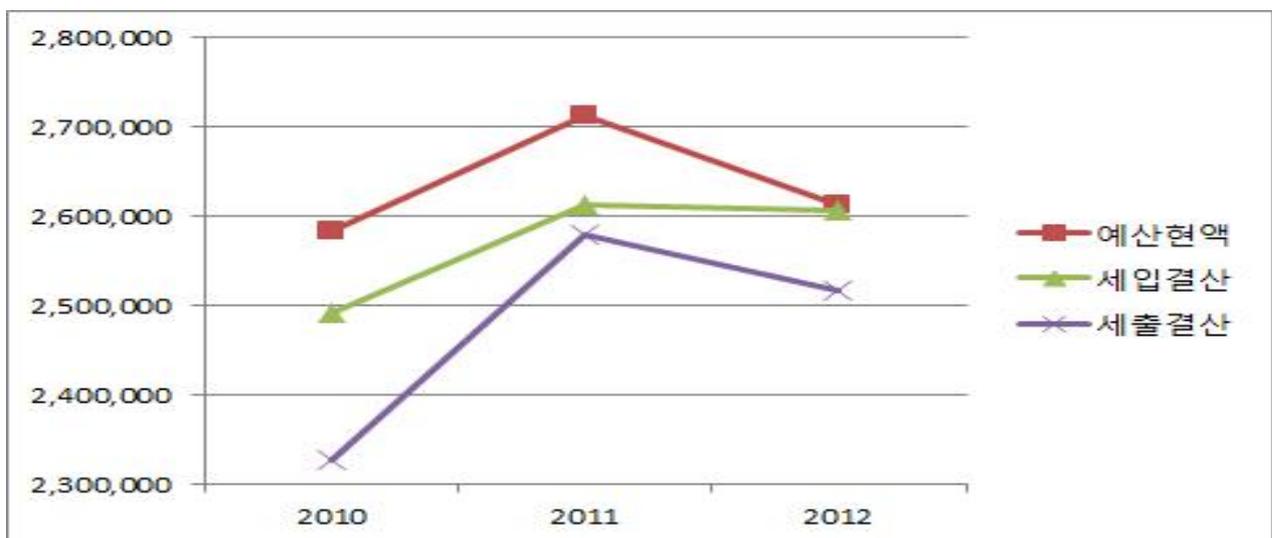
1)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은 매년 교육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20이상을 직접 상환하였을 경우에는 기금에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연도별 증감 추이를 볼 때, 2012 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전년대비 981억 7,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 이는 경제회복의 둔화로 부동산 경기침체가 지속된데 따른 세수 감소와 인천시의 재정난이 주원인으로 파악되며 또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예산절감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연도별 세입·세출결산 증감 추이 >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예산현액 (A)			세입결산 (B)			세출결산 (C)		
	금액	전년도 대비		금액	전년도 대비		금액	전년도 대비	
		증감액	비율		증감액	비율		증감액	비율
2010	2,583,615	38,874	1.5	2,491,580	-85,832	-3.3	2,326,559	108,509	4.9
2011	2,712,056	128,441	5.0	2,612,188	120,608	4.8	2,578,929	252,370	10.8
2012	2,613,884	-98,172	-3.6	2,607,475	-4,713	-0.2	2,517,298	-61,631	-2.4



Ⅲ. 세입 결산

1. 세입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예산현액 대비 수납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	
					증감 (C-A)	수납율 (C/A)	증감 (C-B)	수납율 (C/B)
2,613,884	2,608,740	2,607,475	400	865	-6,409	99.8	-1,265	99.9

○ 2012회계연도 세입 결산 수납액은

- 예산현액 2조 6,138억 8,400만원 대비 99.8%인 2조 6,074억 7,5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3.4% 증가한 것임.
- 수납액 2조 6,074억 7,500만원은 징수결정액 2조 6,087억 4,000만원 대비 99.9%의 수납율을 보이고 있으며
- 미수납액은 8억 6,500만원으로 전년도 미수납액 10억 6,072만원 대비 18.5% 감소하였음.

2. 과목별 세입결산

<과목별 세입결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과 목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예산현액 대비	
						증 감 (C-A)	수납율 (C/A)
합 계	2,613,884	2,608,740	2,607,475	400	865	-6,409	99.8
이전수입	2,433,715	2,441,320	2,441,320	0	0	7,605	100.3
중양정부이전수입	1,859,728	1,880,107	1,880,107	0	0	20,379	101.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48,885	1,869,099	1,869,099	0	0	20,214	101.1
국고보조금	10,842	11,007	11,007	0	0	165	101.5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556,598	543,286	543,286	0	0	-13,312	97.6
법정이전수입 ²⁾	520,476	513,426	513,426	0	0	-7,050	98.6
비법정이전수입 ³⁾	36,122	29,859	29,859	0	0	-6,263	82.7
기타이전수입	17,387	17,927	17,927	0	0	540	103.1
민간이전수입	17,387	17,927	17,927	0	0	540	103.1
자체수입	96,924	100,260	98,995	400	865	2,071	102.1
교수-학습활동수입	87,813	89,566	89,044	134	387	1,231	101.4
기본적교육수입	87,733	89,486	88,964	134	387	1,231	101.4
선택적교육수입	80	80	80	0	0	0	100.0
행정활동수입	935	919	919	0	0	-16	98.3
사용료및수수료수입	935	919	919	0	0	-16	98.3
자산수입	1,883	2,349	2,323	0	26	440	123.4
자산임대수입	478	506	479	0	26	1	100.2
자산매각대	1,405	1,843	1,843	0	0	438	131.2
이자수입	4,279	4,246	4,246	0	0	-33	99.2
기타수입	2,012	3,178	2,460	265	451	448	122.3
제재금수입	332	587	520	0	67	188	156.6
기타수입	1,611	1,881	1,874	0	6	263	116.3
과년도수입	68	708	65	265	377	-3	95.6
지방교육채	44,908	33,900	33,900	0	0	-11,008	75.5
전년도이월금	38,335	33,259	33,259	0	0	-5,076	86.8
순세계잉여금	0	0	0	0	0	0	0.0
이월금	38,335	33,259	33,259	0	0	-5,076	86.8

2) 법정이전수입 : ① 지방교육세전입금 :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교육세 전액, 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2항에 의한 광역시 담배소비세의 45/100, ③ 시도세전입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2항에 의한 광역시세 5/100, ④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학교용지 매입 경비의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금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1/2씩 부담)

3) 비법정이전수입 : ① 도서관법 제29조 제3항 광역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공공도서관운영비 지원금 ② 광역자치단체가 학교교육 관련 사업을 위해 지원하는 광역자치단체전입금 ③ 기초자치단체가 학교교육 관련 사업을 위해 지원하는 기초자치단체전입금

2-1. 이전수입

< 이전수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구성비	수납비율	
					예산현액 대비 (C/A)	징수결정액 대비 (C/B)
계	2,433,715	2,441,320	2,441,320	100.0	100.3	100.0
중앙정부이전수입	1,859,728	1,880,107	1,880,108	77.0	101.1	100.0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556,598	543,286	543,286	22.3	97.6	100.0
기타이전수입	17,387	17,927	17,927	0.7	103.1	100.0

- 이전수입 결산액(수납액)은 총 2조 4,413억 2,000만원으로 전년도 2조 3,391억 2,800만원보다 1,021억 9,200만원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100.3%이고, 미수납액은 없음.
- 관별로 분류하여 보면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1조 8,801억 800만원으로 77.0%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5,432억 8,600만원으로 22.3%
 - 기타이전수입은 179억 2,700만원으로 0.7%를 차지하고 있음.
- 이전수입의 경우는 예산현액 대비 100.3%, 징수결정액 대비 100%로 수납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에서 133억 1,200만원의 세입결손액(예산현액 5,565억 9,800만원 - 수납액 5,432억 8,600만원)이 발생하였음.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2. 자체수입

< 자체수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구성비	수납비율	
					예산현액 대비 (C/A)	징수결정액 대비 (C/B)
계	96,924	100,260	98,995	100.0%	102.1%	98.7%
교수-학습활동수입	87,813	89,566	89,044	89.9%	101.4%	99.4%
행정활동수입	935	919	919	0.9%	98.3%	100.0%
자산수입	1,883	2,349	2,323	2.3%	123.4%	98.9%
이자수입	4,279	4,246	4,246	4.3%	99.2%	100.0%
기타수입	2,012	3,178	2,460	2.5%	122.3%	77.4%

○ 자체수입의

- 결산(수납)액은 989억 9,500만원으로
- 예산현액대비 수납율은 102.1%이고
- 징수결정액대비 수납율은 98.7%를 보이고 있음.

2-3. 지방교육채 및 전년도이월액

< 지방교육채 및 전년도이월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비율		차액 (A-C)
				예산현액 대비 (C/A)	징수결정액 대비 (C/B)	
계	83,243	67,159	67,159	80.7	100.0	16,084
지방교육채	44,908	33,900	33,900	75.5	100.0	11,008
전년도이월액	38,335	33,259	33,259	86.8	100.0	5,076

○ 지방교육채 및 전년도 이월액의

- 결산(수납)액은 671억 5,900만원으로
-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80.7%이고
-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100%임.

○ 지방교육채의 경우 징수결정액 대비 100% 수납하였으나 예산현액 대비 24.5%인 110억 800만원은 지방교육채가 미발행되어 발생한 것임.

○ 전년도 이월액의 경우 징수결정액 대비 100% 수납하였으나 예산현액 대비 차액인 50억 7,600만원(13.2%)은 지난년도 순세계잉여금의 부수(-) 결산에 기인한 것임.

3. 불납결손 및 미수납액 현황

○ 불납결손액⁴⁾은 총 4억 40만원으로

- 사유별로 시효완성⁵⁾ 1억 1,693만원, 기타 2억 8,347만원이며 입학금 및 수업료의 불납결손액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 특히, 과년도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 사유와 내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정당한 징수활동에서 발생한 불납결손이긴 하나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4) 불납결손액은 정당하게 징수결정되어 징수하여야 할 사항이나 채무면제의 결정 통지, 시효의 완성, 기타의 사유로 징수사유가 소멸된 경우에 결손 처분을 하는 것임.

5) 입학금과 수업료는 시효완성이 1년인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임.

< 전년도 대비 불납결손액 현황 >

(단위 : 천원, %)

구 분	과 목	불납결손액	비율	사 유 별			
				무재산	거소불명	시효완성	기 타
2011	합 계	312,013	100.0	0	1,050	294,917	17,045
	입학금 및 수업료	309,017	99.0	0	1,050	291,029	16,938
	과년도수입	2,996	1.0	0	0	2,888	108
2012	합 계	400,406	100.0	0	0	116,931	283,475
	입학금 및 수업료	134,723	33.6	0	0	116,931	17,792
	과년도수입	265,683	66.4	0	0	0	265,683

※ 교육비특별회계결산서 431쪽

○ 미수납액 현황을 살펴보면

- 2012년도 미수납액은 8억 6,519만원으로 매년 10%이상씩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2012년도는 전년도에 비해 20% 가까이 감소하였음.
- 앞으로도 적극적인 세입재원 확보 노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미수납액을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함.

< 연도별 미수납액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사 유 별					
		채 무 자 징수유예	채 무 자 거소불명	채 무 자 재력부족	납부자 태 만	재 산 압류중	기 타
2010	1,186,175	-	-	666,631	463,019	14,934	41,591
2011	1,060,724	12,015	200,191	478,808	258,359	17,477	93,874
2012	865,195	1,377	717	496,997	242,448	16,072	107,583

※ 교육비특별회계결산서 435쪽

4. 예산현액과 세입결산액의 차액 발생

< 주요 세입금의 예·결산 차액 발생 현황 >

(단위 : 백만원)

항 목 6)	예산현액 (A)	세입결산액 (수납액) (B)	차 액 (B-A)	비 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48,885	1,869,099	20,214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556,598	543,286	-13,312	부족수입
기본적교육수입	87,733	88,964	1,231	
지방교육채	44,908	33,900	-11,008	부족수입
전년도이월금	38,335	33,259	-5,076	부족수입

- 총 예산현액과 세입결산액(수납액)에서 64억 900만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음.
 - 발생 주요요인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인 특별교부금 202억 1,400만원과 기본적교육수입 12억 3,100만원 등이 초과 수입된 반면,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33억 1,200만원 미전입, 지방교육채 110억 800만원 미발행, 전년도이월금 50억 7,600만원이 감소한데 따른 것임.
- 감소 요인별 내역으로는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예산현액 5,565억 9,800만원 대비 수납율이 97.6%로 차액인 133억 1,200만원이 모두 인천시로부터의 광역자치단체 전입금과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는 인천시 재정난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됨.
 - 특히, 지방교육채는 “만5세 누리과정 지원” 등 4개사업에 대한 재원 조달을 위해 지방교육채 발행 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 법정이전수입, 비법정이전수입 / 기본적교육수입 : 수업료, 입학금 등

- 이 중 “만5세 누리과정 지원” 사업은 관계법령⁷⁾에 따라 시행되면서 사업비 재원이 보통교부금 지원대상인 사업으로 본예산 편성시 우선적으로 소요액 216억 2,400만원 전액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50%인 108억 1,200백만원만 계상하여, 이후 재원조달이 어려워지자 2012년 5월(제1회추경)에 지방채 발행을 승인받은 것임.⁸⁾
- 결과적으로, 동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채를 미발행하고 별도 가용재원으로 사업예산을 충족하였으나, 향후에 급증하는 보육 관련 예산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시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보육관련 예산이 조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2012년도 지방교육채 승인내역 >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사 업 명	1차 승인액 (2012. 5월)	2차 승인액 (2012. 9월)	증감액
총 계	4 건	35,019	44,908	9,889
창의인성교육과	만5세 누리과정 지원	10,813	10,813	0
평생교육체육과	인천체고 제2훈련동 증축	9,825	9,825	0
교원정책과	계약제 교원 운영	7,918	17,807	9,889
교육협력과	비정규직 처우개선	6,463	6,463	0

○ 전년도 이월금 예산현액은 383억 3,500만원, 수납액은 332억 5,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이 86.8%로 50억 7,600만원의 차액이 발생하였음. 이는 2011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의 51억원 부수(-) 결산으로 인한 것임.

7) “만5세 누리과정 지원사업”은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영유아보육법」 제35조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이고, 그 사업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1]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에 따라 보통교부금으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음.

8) “지방채 발행 관련 2012년도 감사원 감사결과” 인용

5. 연도별 잉여금 처리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세계잉여금 (A)	이월사업비 (B)	국고보조금 잔액 (C)	지방채상환 (D)	순세계잉여금 (A-B-C-D)
2010	165,021	215,618	-	-	-50,597
2011	33,259	38,335	29	-	-5,105
2012	90,177	67,328	-	4,700	18,149

- 2012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181억 4,900만원의 순이익이 발생되었으나, 아래 표와 같이 법정이전수입금은 최종예산액 대비 71억원의 세수결손액이 발생하였음.
- 향후, 전입금 등 예산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 교육재정의 건전화에 노력해야 할 것임.

< 회계연도별 법정이전수입⁹⁾ 예산 · 결산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최종 예산안 (A)	법정전입금	4,213	4,771	4,888
	학교용지부담금	665	329	317
	소 계	4,878	5,100	5,205
세입 결산액 (B)	법정전입금	3,958	4,124	4,918
	학교용지부담금	427	329	216
	소 계	4,385	4,453	5,134
최종 예산액 대비 세수결손액 (B-A)	법정전입금	-255	-647	30
	학교용지부담금	-237	0	-101
	합 계	-493	-647	-71

9) 법정이전수입 : 법정전입금(지방교육세전입금, 담배소비세전입금, 시도세전입금),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IV. 세출 결산

1. 세출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

예산액 (A)	예산성립후 증감 (B)	예산현액 (C=A+B)	지출액 (D)		다음년도 이월액 (E)		불용액 (F=C-D-E)	
			금액	비율 (D/C)	금액	비율 (E/C)	금액	비율 (F/C)
2,575,548	38,336	2,613,884	2,517,298	96.3	67,328	2.6	29,258	1.1

○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 예산액 2조 5,755억 4,800만원과 예산성립후 증감액 383억 3,600만원을 더한 예산현액은 2조 6,138억 8,400만원으로,
- 이 중 지출액은 2조 5,172억 9,800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96.3%로 전년도(95.1%)에 비해 1.2% 증가하였음.
- 다음연도 이월액은 673억 2,800만원(2.6%)으로 전년도(1.4%) 대비 1.2% 증가하였고
- 불용액은 292억 5,800만원, 불용율은 1.1%로써 전년도(3.5%)에 비해 2.4% 감소하였음.

2. 정책사업별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A)	구성비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불용액 (D=A-B-C)	
			금액	비율 (B/A)	금액	비율 (C/A)	금액	비율 (D/A)
합 계	2,613,884	100.0	2,517,297	96.3	67,328	2.6	29,257	1.1
유아및초중등교육	2,491,804	95.3	2,410,536	96.7	65,937	2.6	15,330	0.6
인적자원운용	1,438,409	55.0	1,436,999	99.9	0	0.0	1,409	0.1
교수-학습활동지원	232,652	8.9	228,503	98.2	1,056	0.5	3,093	1.3
교육복지지원	149,960	5.7	149,633	99.8	0	0.0	327	0.2
보건/급식/체육활동	43,868	1.7	35,411	80.7	7,806	17.8	651	1.5
학교재정지원관리	432,494	16.5	429,001	99.2	0	0.0	3,492	0.8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194,418	7.4	130,986	67.4	57,075	29.4	6,355	3.3
평생·직업교육	13,305	0.5	12,758	95.9	0	0.0	547	4.1
평생교육	13,129	0.5	12,583	95.8	0	0.0	545	4.2
직업교육	176	0.0	174	98.9	0	0.0	1	0.6
교육일반	108,773	4.2	94,002	86.4	1,391	1.3	13,379	12.3
교육행정일반	18,820	0.7	16,134	85.7	1,371	7.3	1,314	7.0
기관운영관리	28,387	1.1	26,909	94.8	19	0.1	1,458	5.1
지방채상환및리스료	51,369	2.0	50,950	99.2	0	0.0	418	0.8
예비비및기타	10,195	0.4	8	0.1	0	0.0	10,187	99.9

○ 정책사업별 예산현액 구성비를 보면

- 유아 및 초중등교육이 2조 4,918억 400만원으로 95.3%
- 평생 및 직업교육이 133억 500만원으로 0.5%
- 교육일반은 1,087억 7,300만원으로 4.2%이며

○ 교육일반 중 교육행정일반의 경우, 불용율이 7%로 타 사업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3. 소관별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

소 관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이월액 (C)		불용액 (D=A-B-C)	
		금액	비율 (B/A)	금액	비율 (C/A)	금액	비율 (D/A)
합 계	2,613,884	2,517,297	96.3	67,328	2.6	29,257	1.1
본 청	2,084,125	2,008,847	96.4	52,143	2.5	23,134	1.1
지역교육청	504,201	484,643	96.1	15,184	3.0	4,373	0.9
직 속 기 관	25,557	23,807	93.2	0	0.0	1,749	6.8

○ 소관별 결산내역을 보면

- 본청, 지역교육청은 예산현액 대비 96%이상의 집행율과 3%미만의 이월·불용율이 발생하였으나, 이월액과 불용액이 본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전체예산 대비 본청의 예산 비율이 높기 때문임.
- 직속기관은 불용율이 다른기관에 비해 높게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4. 성질별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A)	구성비	지출액 (B)		다음연도이월액 (C)		불용액 (D=A-B-C)	
			금액	비율 (B/A)	금액	비율 (C/A)	금액	비율 (D/A)
합 계	2,613,884	100.0	2,517,297	96.3	67,329	2.6	29,257	1.1
인 건 비	1,224,378	46.8	1,223,633	99.9	0	0.0	745	0.1
물 건 비	136,267	5.2	131,196	96.3	854	0.6	4,217	3.1
이 전 지 출	218,807	8.4	218,207	99.7	0	0.0	600	0.3
자 산 취 득	214,470	8.2	148,958	69.5	58,480	27.3	7,032	3.3
상 환 지 출	42,438	1.6	42,155	99.3	0	0.0	284	0.7
전 출 금 등	767,296	29.4	753,112	98.2	7,995	1.0	6,189	0.8
예비비및기타	10,224	0.4	37	0.4	0	0.0	10,187	99.6

○ 성질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 자산취득비의 경우 다음연도이월액은 예산현액(2,144억 7,000만원) 대비 27.3%인 584억 8,000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3%인 70억 3,200만원으로 전년도(365억 8,400만원) 대비 80.8%인 295억 5,200만원이 대폭 감소하였음.
- 물건비 불용액은 예산현액(1,362억 6,700만원) 대비 3.1%인 42억 1,700만원으로 전년도(28억 4,900만원) 대비 48%인 13억 6,800만원이 증가하였음.

○ 자산취득비와 물건비는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행정 활동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임에도 타 과목에 비해 불용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5. 불용액

< 연도별 불용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	불용율
2008	2,393,216	2,007,623	267,927	117,666	4.9
2009	2,544,740	2,218,050	191,802	134,888	5.3
2010	2,583,615	2,326,559	215,618	41,438	1.6
2011	2,712,056	2,578,930	38,336	94,790	3.5
2012	2,613,884	2,517,298	67,328	29,258	1.1

○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따른 불용액이 292억 5,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로 전반적으로 계획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한정된 재원을 시급한 분야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에서 과다 불용사업이 발생하였음.

- 저소득층자녀교과용 도서지원 사업은 불용액이 7억 9,938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율이 67.8%이며
- 시설사업지원관리사업은 사업비(1,740만원) 전액이 불용되었으며
- 민원봉사실운영비는 대부분의 지역교육청에서 70%이상의 불용율을 보이고 있음.
- 특히, 시설사업지원관리사업에 대하여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00% 불용한 바,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과다 불용사업 현황 >

(단위 : 천원, %)

기관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이월액 제외)	불용율	불용사유
창의인성 교육과	학생생활지도지원	7,780	5,178	2,602	33.4	예산절감, 집행잔액
교육과정 기획과	저소득층자녀교과용 도서지원	1,179,579	380,193	799,386	67.8	저소득층자녀 교 과서지원 기준변 경에 따른 특별 교부금 잔액
교육 시설과	시설사업지원관리	17,400	0	17,400	100.0	부실시공방지 위원회 미개최 및 신고포상금 지급사유 미발생
남부교육 지원청	민원봉사실운영	7,384	1,240	6,144	83.2	예산절감, 집행잔액
	지방공무원교육훈련	5,000	1,254	3,746	74.9	예산절감, 집행잔액
	지역교육청기본운영비 (학생건강안전과)	37,118	24,310	12,808	34.5	예산절감, 집행잔액
북부교육 지원청	민원봉사실운영	6,650	1,650	5,000	75.2	예산절감, 제증명 자동인 증기 구입 폐지
동부교육 지원청	지방공무원상훈관리	1,200	840	360	30.0	예산절감, 집행잔액
	지방공무원인사관리	1,930	1,016	914	47.4	
	민원봉사실운영	6,700	800	5,900	88.1	
서부교육 지원청	지방공무원교육훈련	5,360	3,360	2,000	37.3	예산절감
강화교육 지원청	특수교육교수 학습방법개선	5,716	2,357	3,359	58.8	예산절감
	전국체육대회	2,673	1,638	1,035	38.7	예산절감, 집행잔액

※ 교육비특별회계 예결위 요구자료 23쪽

6. 예산 이용 · 전용 및 이체

(단위 : 백만원, %)

구 분	건 수	예산현액 (A)	변경액 (B)	비율 (B/A)
합 계	36	161,130	39,833	24.7
예산이용	-	-	-	-
예산전용	9	36,585	3,394	9.3
예산이체	27	124,545	36,439	29.3

※ 교육비특별회계 예결위 요구자료 43쪽

○ 예산 전용액은 9건에 33억 9,400만원으로

- 예산 전용은 예산집행에 있어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 등으로 예산집행과정에 발생하는 경직성을 완화시켜 탄력성을 부여하고 불용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원칙적으로 예산은 편성 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 향후에는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용도와 금액의 범위내에서 세출 예산이 집행되도록 전용을 최소화하고, 예산편성 · 의결을 통해 소요 경비를 확보 · 집행하여야 할 것임.

○ 예산 이체액은 27건 1,245억 4,500만원으로 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임.

7. 다음연도 이월액

< 연도별 이월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현액	이월액					
		계	비율	명시이월액	비율	사고이월액	비율
2010	2,583,615	215,618	8.3	45,594	1.8	170,024	6.6
2011	2,712,056	38,335	1.4	2,819	0.1	35,516	1.3
2012	2,613,884	67,327	2.6	12,092	0.5	55,235	2.1

-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이월사업비는 예산현액 대비 2.6%인 673억 2,700만원이며, 전년도에 비하여 289억 9,200만원이 증가하였음.
- 이월별 내역 중 사고이월은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써 총 예산현액 대비 2.1%인 552억 3,500만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197억 1,900만원이 증가하였음.
- 이월사업은 보다 엄격한 제약과 통제기능이 필요하며, 이월액을 줄일 방법으로 예산편성 시 당해연도 사업집행의 정확한 분석과 예측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회계연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8. 예비비 지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출결정액	지출액	지출사유
에듀파인 기능개선 시·도 분담금	202	202	에듀파인 기능개선 시·도 분담 금을 추경예산에 편성 사용시 그 시기가 촉박하여 교과부 계 획 통보(2012.4.5) 의거 민간대 행사업비로 사용

※ 교육비특별회계 예결위 요구자료 111쪽

○ 예비비는 1건 2억 2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함.

- 예비비는 예산편성 후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하거나 긴급한 재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마련된 예산임.
- 에듀파인 기능개선 사업은 성인지 및 성과관리 예산 도입을 위해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성인지 예산의 경우 2011. 3. 8 지방재정법 개정 공포됨에 따라 본 예산제도 도입 추진이 미리 예측 가능했을 것으로 사료되고,
- 예비비 사용결정 승인은 2012. 5. 4일에 있었으나 2012. 5. 24일에 2012년도 1회 추경예산이 확정되었는 바,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예비비를 사용할 정도로 시급했는지에 대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9. 채무부담행위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사 업 명	채무부담 승인액		채무부담 행위액	
		금액	전년도 대비 증감비율	금액	전년도 대비 증감비율
2010	학교 BTL 사업	991,780	18.7	35,656	29.2
2011	"	1,067,613	7.6	38,612	8.3
2012	"	1,067,613	-	43,263	12.0

※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서 393쪽 및 예결위 요구자료 127쪽

- 학교 BTL¹⁰⁾ 사업은 공공기관에서 시급하게 공급이 필요한 학교 등의 생활기반시설에 대해 재정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적시에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상기 표에서 보듯 채무부담 행위액(시설임대료, 운영비)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상환기간이 20년으로 장기간 공공기관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신설교 개교시 신중한 검토와 정확한 재정운영 추계를 통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 또한, 학교 BTL 사업의 협약기준(상환조건 등)은 민간사업자와 당초 협약이 체결되면 상호합의가 있어야만 변경협약이 가능하므로, 일정기간마다 변경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불합리한 점을 발견 시 적극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이 요구됨.

¹⁰⁾ BTL(Build-Transfer-Lease)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나와 있는 민간투자사업 방식의 하나로써 사회기반시설의 준공(Build)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Transfer)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 관리운영권(사용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 관리운영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Lease)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10. 채권 및 채무 결산

(단위 : 백만원)

종 류	전년도말 현재액 (A)	당해연도중 발생액 (B)	당해연도 소멸액 (C)	당해연도말 현재액 (A+B-C)
채 권	49,412	30,919	581	79,750
채 무	103,951	77,163	50,714	130,400

※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서 399쪽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797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 494억 1,200만원 보다 303억 3,800만원(61.4%)이 증가하였음.
 - 주요요인으로는 대여장학금이 297억 44만원으로 당해연도중 발생액의 96%를 차지하고 있음.
 - 앞으로도 적극적인 채권회수 활동 등을 통해 자체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채무 현재액은 1,304억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1,039억 5,100만원 보다 264억 4,900만원(25.4%)이 증가한 것으로,
 - 증액된 264억 4,900만원은 당해연도중 채무발생액 중 지방교육채 339억원에서 상환·소멸액인 74억 5천만원이 공제된 것임.
 - 향후, 적극적인 재원마련 및 예산절감 등을 통해 차입행위 발생을 억제하는 등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11.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단위 : 백만원)

용도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년도증감액			당해년도말 현재액
		계	증	감	
합계	6,745,051	428,545	499,268	70,723	7,173,596
행정재산	6,696,315	429,032	489,500	60,468	7,125,347
일반재산	48,736	-487	9,768	10,255	48,249

※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서 411쪽

- 2012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7조 1,735억 9,600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6조 7,450억 5,100만원 보다 4,285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용도별로 행정재산 6조 6,963억 1,500만원, 일반재산 487억 3,600만원임.

12.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단위 : 백만원)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년도 증감액				당해년도말 현재액	
		증		감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40,426	217,699	4,125	24,287	2,889	14,414	41,662	227,572

※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서 415쪽

- 당해년도 물품 증가액은 242억 8,700만원이며, 감소액은 144억 1,400만원으로 98억 7,300만원이 증가하여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2,275억 7,200만원임.

V. 결산검사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

1. 특별교부금 인천광역시교육청 할당 관리 철저 필요

□ 현 황

- 2012년 사업 중 학교폭력예방홍보 캠페인 드라마 제작비 지원 20억원, 학교폭력 예방교육 영상물 제작 비용 6억원, 언론기관 참여 방과후학교 2차 시범사업 12.3억원, 2011 방과후학교 내실화 방안 후속사업 8.6억원, 인성교육 인쇄보급사업 27.04억원, EBS 수능강의 운영지원 14.8억원, 독도 관련 TV 다큐 제작 및 만주지역 고문자 연구 4억원, 학교생활규칙 현장 정착지원 5.34억원 등이 국가시책사업 인천광역시교육청 특별교부금으로 편성 집행됨.
 - 학교폭력예방홍보 캠페인 드라마 제작 사업 20억원(KBS)
 - 학교폭력 예방교육 영상물 제작 비용 6억원(KBS미디어)
 - 언론기관 참여 방과후학교 2차 시범사업 12.3억원(KEDI한국교육개발원)
 - 2011 방과후학교 내실화 방안 후속사업 8.6억원(KEDI한국교육개발원)
 - 인성교육 인쇄보급사업 27.04억원(인천광역시교육청)
 - EBS 수능강의 운영지원 14.8억원(한국교육방송공사)
 - 독도 관련 TV 다큐 제작 및 만주지역 고문자 연구 4억원(동북아 역사재단)
 - 학교생활규칙 현장 정착지원 5.34억원(청소년정책연구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 보통교부금을 96%, 특별교부금을 4% 지원하는 데, 특별교부금 4%는 국가시책추진사업 60%, 재해대책사업 10%, 지역교육현안사업 30%로 편성함.
- 전국 초, 중, 고 학생 총수 대비 인천지역 학생 총수는 약 6%임.

(2012. 4. 1.기준)

구분	학 생 수				비 고
	초	중	고	합 계	
서울	500,608	313,642	342,393	1,156,643	
부산	171,333	114,936	124,020	410,289	
대구	145,698	97,515	104,820	348,033	
인천	164,260	103,593	107,237	375,090	

구분	학 생 수				비 고
	초	중	고	합 계	
광주	102,328	66,413	66,666	235,407	
대전	98,665	61,598	63,496	223,759	
울산	71,544	47,785	50,964	170,293	
경기	775,163	463,600	462,490	1,701,253	
강원	88,381	56,162	55,468	200,011	
충북	93,384	58,140	58,905	210,429	
충남	126,637	76,409	77,405	280,451	
전북	111,563	72,040	73,212	256,815	
전남	10,235	69,647	72,106	151,988	
경북	144,439	91,614	95,090	331,143	
경남	201,649	126,860	128,541	457,050	
제주	39,642	23,174	22,804	85,620	
합계	2,845,529	1,843,128	1,905,617	6,594,274	

□ 문제점

- 2012년 중앙정부 이전수입 중 특별교부금이 총 90,763백만원인데, 이중 교과부 시책사업이 총 얼마인지, 타 지역과의 비교에서 국가시책사업비가 특별교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인천시교육청이 인천 교육현안사업을 위한 특별교부금 할당 부족 피해를 보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총괄적 검토가 안되고 있음.
 - 예산부서의 총괄검토를 통해 추진되지 않고 정부의 일방적 결정 또는 정부 외 업무 담당부서간의 협의를 통해 사업이 추진됨.
(예) 인성교육 인채보급사업 2,704백만원
 - 전국 초6, 중1~2, 고1 대상 인성교과서 보급 : 2,501백만원(8,340,000부×300원)
 - 전국 초, 중, 고 담당교사 '교사용 지도서' 보급 : 203백만원(254,000부×800원)
 - 전국 교원 연수 : 176백만원
- 타·시도 교육청보다 과도한 국가시책 특교사업 교부는, 업무량 증가로 인한 인천 광역시교육청 고유의 업무에도 부정적 영향을 줌.

□ 감사의견

- 국가시책에 의해 인천광역시교육청에 교부되는 특별교부금 사업비가 타·시도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지 지속적인 관리 필요.

2. 진로진학 지원센터 마중물 지원 확대

□ 현 황

1. 운영 목적

인천시교육청이 찾아가는 교육행정지원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변화하는 대학 입학제도에 대비하여 초·중·고등학교에서 체계적인 준비와 능동적인 진로 및 진학(대학입시) 지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2. 최근 3년간 주요대학 진학 실적

구 분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카이스트	포스텍	의대, 치대 한의대	총계	전년 대비 향상을
2011	134	179	178	40	58	49	638	
2012	142	238	226	41	65	50	762	19% 증가
2013	158	245	222	57	81	29	792	4% 증가

3. 마중물 운영 예산

(단위: 천원)

연 도	예 산	비 고
2011년	225,280	
2012년	203,440	
2013년	178,714	

4. 주요 사업(진로진학상담센터 운영)

가. 운영일시 : 월~토 09:00~17:00

나. 장 소 :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진학지원센터

다. 내 용 : 진로상담, 진학(대학입시)상담, 학습상담

라. 상담교사 : 진로진학상담교사가 각 요일별로 2명씩 상주하며 1:1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마. 상담도구 : 대교협 진로진학상담 프로그램, 인천 마중물 진로진학상담 프로그램

바. 상담 준비물 : 교과 및 비교과 영역 자료

(학교생활기록부, 모의고사 성적표, 개인활동자료)

사. 상담 절차

1) 사전 온라인 신청: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http://jinhak.ice.go.kr>), 032-420-8475

2)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진학지원센터 방문(상담 예약)

3) 전문상담교사 개인상담(1시간 내외)

아. 전문상담교사: 10명(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교사, 대입장학지원위원, 대학교육협의회 대표강사, EBS·대교협 대입상담교사)

자. 상담 실적

2011년	2012년	2013. 4월 현재
1,025건	2,215건	469건

차. 홍보 활동

1) 인터넷 다음 사이트 배너 활용 홍보

2) 리플렛 배부를 통한 홍보 실시(연간 20,000장 배부 및 홍보)

3) 각종 설명회를 통한 홍보 실시(입학설명회, 수·정시 입학박람회 등)

□ 문제점

- 대학 입학전형의 복잡 · 다양화로 보다 능동적인 대응과 사업추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삭감으로 인해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움.

□ 감사의견

- 인천시교육청이 찾아가는 진로 컨설팅제도로써 진학실적을 향상시키는 좋은 제도라 볼 수 있음
- 도서지역 등 거리상 교육청을 찾아오기 힘든 곳을 진로진학 상담교사가 방문하여 지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봄.
- 변화하는 대학 입시제도에 대비하여 초·중·고에서 체계적인 준비와 능동적인 진로 및 진학지도 방안이 폭넓게 마련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봄.

3. 교원의 타지역 거주 성찰 모색과 교육지원청별 적정 비율 조정 필요

□ 현 황

- 교육청 본청과 교육지원청별 교원의 거주지 현황을 살펴보면,
 - 본청 소속인 고등학교는 총 4,551명중 인천이 3,378명, 서울·경기가 1,103명, 기타 70명으로, 약 25.8%가 타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 남부교육지원청은 초등학교가 총 1,471명 중 인천이 1,246명, 서울·경기가 177명, 기타 48명으로, 약 15.3%가 타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중학교는 총 611명 중 인천이 475명, 서울·경기가 111명, 기타가 25명으로, 약 22.3%가 타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 북부교육지원청은 초등학교가 총 1,456명 중 인천이 911명, 서울·경기가 529명, 기타가 16명으로, 약 37.5%가 타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중학교는 총 830명 중 인천이 431명, 서울·경기가 397명, 기타가 2명으로, 약 48.1%가 타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 동부교육지원청은 초등학교가 총 2,219명 중 인천이 1,970명, 서울·경기가 221명, 기타가 28명으로, 약 11.3%가 타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중학교는 총 1,258명 중 인천이 1,048명, 서울·경기가 190명, 기타가 20명으로, 약 16.7%가 타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 서부교육지원청은 초등학교가 총 2,460명 중 인천이 1,848명, 서울·경기가 566명, 기타가 46명으로, 약 24.9%가 타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중학교는 총 1,297명 중 인천이 834명, 서울·경기가 429명, 기타가 34명으로, 약 35.7%가 타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 강화교육지원청은 초등학교가 총 217명 중 인천이 192명, 서울·경기가 21명, 기타가 4명으로, 약 11.6%가 타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중학교는 총 109명 중 인천이 84명, 서울·경기가 21명, 기타가 4명으로 약 23%가 타지역에 거주하고 있음.
- 총 16,479명 중 인천이 12,417명, 서울·경기가 3,765명, 기타 297명으로, 24.7%가 타지역 거주.

□ 문제점

- 북부교육지원청소속 중학교 교원의 약 48.1%가 인천이 아닌 타지역 거주하여, 지방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침.
- 교육 주체로서 인천교육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자세 부족.
- 서울과 경기도에 가까운 북부교육지원청과 서부교육지원청에 타지역 거주 교원이 압도적으로 많음.

□ 감사의견

- 인천교육을 책임지는 교원들의 자녀교육을 위한 타지역 거주에 대한 성찰과 개선 방안 모색 필요.
- 특정(북부,서부) 교육지원청의 타지역 거주 교원 비율이 높은바, 적정 비율 위한 조정 필요.

4. 식중독 예방 등 학교급식 시스템 개선 필요

□ 현황

- 2011년 중학교 1곳과 고교 1곳 82명의 학생과 종사자가 식중독 피해를 입었으나, 최종 원인불명으로 확정되어 해당 학교 및 관계자 처분은 위생관리 철저히시로 종결됨.
- 2012년은 11개교 883명이 식중독 피해를 입었으며, 과태료 및 영양사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가 내려진 학교 3교, 추정감염원 불명으로 종료된 학교 1교(고등학교), 외부조리식품을 납품받은 김치가 원인이 된 학교 7교임.
 - 해당 업체는 관할구청의 영업폐쇄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 중임.
 - 행정처분 조치가 내려진 학교 3교 중, 처분을 이행한 학교는 중학교 1교, 이의신청 결과 처분이 취소된 학교는 고등학교 1곳, 현재 이의신청 중인 학교는 고등학교 1곳임.
- 조리종사자(배식원 포함) 안전사고는 2011년에 초등학교 6건, 고등학교 5건 총 11건이 발생했으나, 2012년에는 초등학교 17건, 중학교 10건, 고등학교 9건 총 36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함.

□ 문제점

- 2011년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으로 82명의 학생이 피해를 입었으나, 원인규명 미흡에 따른 원인불명으로 종결됐고, 2012년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에 따른 처분이 내려진 학교와 해당업체도 이의신청에 따라 처분이 취소되거나 소송중인데, 현재 식중독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사전 검사나, 식중독 발생후 검사와 이력추적 등 전반에 대한 기본 일상 업무가 교육청이 아닌 인천광역시의 업무임.
 -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 납품 전까지의 식재료납품업체 위생 안전성 관리는 인천광역시가 맡고, 학교는 위생적인 조리과 안전하고 교육적인 배식에 전념하게 하는 '인천광역시친환경무상급식지원조례'를 제정했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음.

※ 참고

- 교육부의 학교급식 위생관리 업무분장 사항
 - 학교밖 공급업체 위생관리 : 시청, 지자체, 식약청 주관
 - 학교내 직영급식소 위생관리 : 교육청 주관

- 인천시교육청도 관계기관과의 일상적인 업무공조를 통한 안전한 식자재 공급과 급식소와 급식 관계자 위생관리를 철저히 기해야 하나, 그동안 예방적 업무공조가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조리종사자(배식원 포함)의 안전사고 예방은 안전하고 안정적인 급식 관리에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가 3배이상 급증하였음.
- 고용의 안전성을 통한 숙련도 증가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과 처우개선이 필수적인데, 조리종사자(배식원 포함)에 대한 학교단위 관리의 한계를 나타냄.

◎ 2012~2013년도 인천시교육청의 식중독 예방 추진 사업

- 학교급식소 위생관리
 - 학교급식소 정기 위생·안전 점검 및 운영 평가(연1회)
 - 식약청 합동 학교급식소 위생 점검(연 2회)
 - 간부공무원 학교급식소 특별 위생 점검(연2회)
 - 학교급식점검단 학교급식소 불시 위생 점검
 - 학교급식관계자 안전학교급식 직무연수(연 4회 이상)
 - 관내 학교급식시설 미생물 정기검사 (연1회)
- 생산단계 식재료 위생관리
 - 인천광역시교육청 「위생불량업체 신고센터」 운영
 - ※급식소위원회 등에서 식재료 납품업체 현장방문 시 적발된 위생 불량 업체를 인천시교육청 홈페이지 및 유선망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시스템
 - 학교급식점검단 식재료 납품업체 불시 위생점검(전수조사, 122곳)
 - 학교급식팀 및 학교급식점검단의 인천시 전체 김치제조업체 특별위생점검 중 (2013.6.14까지)
 - 식재료 납품업체 합동점검(교육청, 식약청, 지자체 합동점검) (연 2회 이상)
 -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위생교육(1회 이상)
- 학교 납품된 식재료 안전성검사
 - 농·수산물 잔류농약·중금속검사실시(농산물품질관리원)
 - 한우유전자검사실시(교육지원청, 보건환경연구원)→교육청 예산으로 시행
- 안전학교급식 환경조성을 위한 협의회
 - 교육지원청 학교급식담당자 식중독 예방 대책 협의회(연2회이상)
 - 식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청주관 유관기관(교육청, 시청, 보건환경연구원, 경인식약청)정기협의회 실시 : 연 4회(2,4,8,11월)
 - 인천시청 등 유관기관의 원활한 협조 요망
- 학교급식 환경개선을 위한 학교급식소 현대화 사업 실시를 위한 지속적 노력

□ **검사의견**

- 식중독 발생시 원인에 대한 철저한 규명위해, 관계기관과의 공조체계 강화 필요.
- 인천광역시친환경무상급식지원조례에 의한 학교급식시스템 개선전까지, 식재료의 안전성과 납품업체, 조리실 등의 예방적 위생관리 사업을 편성하여, 인천보건환경연구원 등 유관기관 재배정 사업으로 추진 필요.
-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 친환경 농산물이 학교급식에 우선 공급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체계 구축 필요.
- 조리종사자(배식원 포함)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근원적인 해결책인 업무 숙련도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인천시교육청 차원에서 고용안정 대책과 처우 개선책을 강구할 것.

5. 장애인 근로자 고용 부담금 납부 대책 강구

□ 현황

- 2010년부터 시행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 3에 의거 장애인 고용의무인원에 미달할 경우 근로자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장애인근로자 고용부담금 납부현황】

(단위 : 원)

납부년도 (해당연도)	납부금액	비고
2011년 (2010년)	911,600,000	
2012년 (2011년)	1,108,942,800	
2013년 (2012년)	1,128,861,750	
2014년 (2013년)	271,684,000	납부예정 (예상금액)

□ 문제점

- 인천시교육청의 고용의무 인원수를 202명으로 2013년 5월 현재 전국에서 3번째(강원, 부산)로 정원수를 채웠으나, 상기와 같이 미달수에 대한 부담금을 납부하였음

□ 감사의견

- 앞으로 의무 고용율이 2.5%에서 2.7%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고용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장애인 고용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람.